

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(공시 송달)

「항공안전법」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대상 및 처분사항

연번	성명	주소	행정처분 내용
1	Carlos, OOOOOOOOO Oropeza	인천시 중구 영종해안 남로 321길 208 그랜드 인천 하얏트호텔	항공종사자(운송용조종사)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(2023.7.1.~2023.8.14.)

2. 근거 법령: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제25호 및 제30호, 같은 법 시행
규칙 제97조제1항, [별표 10] 제2호가목 29), 34)

3. 유의 사항

가.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행정절차법 제26조, 행정심판
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
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
(법원)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
김승진 주무관(☎044-201-424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